

1회용품 사용규제(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) 제외대상

[시행 2023. 1. 12.] [환경부고시 제2023-8호, 2023. 1. 12., 일부개정]

환경부(자원순환정책과), 044-201-7346, 7352

제1조(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) ①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·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[별표2]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, 제과점업 : 1회용 봉투 및 쇼핑백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: 1회용 빨대·젓는 막대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 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-8호, 2023.1.12.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